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정책과)

의안번호	제255호
제 출 자	권영애 의원 외 19명(2024. 2. 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급속히 상승한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1인 창조기업의 범위까지를 포괄함(안 제2조, 현행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

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법률 제18961호, 2022. 6.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용어의 뜻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²⁾로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의 범위가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지를 포함시켰으며,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삭제함.

-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시켰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